

〈논 문〉

麗末鮮初의 親族의 稱呼와 範圍

朴秉濠*

I. 序言

한국의 친족조직 법제만큼 중국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오늘날까지 즉, 1989년 개정 가족법에 이르도록 뿌리깊이 생명력을 지속하고 있는 제도도 드물다. 서기 504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면 실로 1,500여 년에 달하도록 중국의 喪服制가 친족의 개념, 조직, 칭호, 법률상 권리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한국의 고유 관습을 그에 동화시키면서 父系的 同宗結合을 강화시켜왔으나, 다른 한편 고유한 친족관습도 일부 계층과 지방에 잔존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가치가 있다.

필자는 1950년대부터 한국의 17세기 무렵까지 일반적 혼인관습이었던 男歸女家婚俗에 관심을 갖고, 한국의 전통적 가족 제도·관습이 중국 법제의 계수에 도 불구하고 그 혼속에 기반하여 저항관계를 지속하여온 점에 주목했다. 그리고 1962년에 법제상의 친족관계 규제에 있어 고유한 특색이 남귀여가혼속에서 유래하는 점을 논하고 간단하나마 가족의 가부장제적 성격도 마찬가지로 한정되었던 점을 언급한 적이 있다.¹⁾ 그와 동시에 필자는 현재 상복제적인 친족칭호와 함께 관행되고 있는 친족칭호 및 호칭이 여말선초의 그것과 동일하든지 아니면 그에 연원을 두고 있을 가능성에 생각이 미쳐 그것을 검증할 필요를 느꼈다. 그즈음 한국의 학계는 문화인류학계에서 필자의 견해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듯 하였고 국사학·국어학 전공의 학자가 친족제도와 칭호를 연구하고는 있었지만 그 中國制에 대한 특색이 유래한 연원을 다루지 못한, 평면적 차원에 그치는 것이었다. 필자가 앞서 말한 글을 발표한 당시에 국어학계에서는 여말선초의 친족칭호 및 호칭에 대한 언어학적인 탐구가 자료의 제한 등을 이유로 부진하였으나 그후 다수의 연구업적이 계속 나와 필자도 참고할 수 있게 되어서 필자의 문제관심을

* 서울대학교 法科大學 名譽教授

1) 참고, “率媾婚俗에서 유래한 親族과 禁婚範圍”, 서울대학교 法學 제4권 1·2호, 1962. 12, 140-165면. 이후 출저, 韓國法制史攷(1974. 3. 법문사), 323-354면에 재수록.

표명할 필요를 느끼고 있었다.

이 글은 친족칭호 내지 호칭에 관한 가장 오래되고도 가장 중요한 근본자료인 鷄林遺事와 大明律의 親族稱呼直解와 經國大典을 기본자료로 하고 국어학계의 연구성과를 참고하였고, 필자의 앞서 말한 글을 발판으로 하여 고려 말부터 조선 초기의 친족의 칭호와 법제상의 친족관계가 남귀여가혼속에서 유래한 사정을 다시 한번 시도하는 것이다. 덧붙여, 大明律直解와 경국대전의 친족칭호의 기재에 대해서는 그 역사적 의의 및 구조원리 등을 연구한 문헌이 아직 없으므로 번잡하지만 하나하나 인용하는 점을 양해하여 주기 바란다.

II. 稱呼에 婚俗이 미친 影響

한국에서 16세기경까지 일반적으로 행하여졌던 男歸女家婚俗은 가족제도, 특히 친족제도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중국의 친족칭호가 법률제도로써 강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을 가지지 못하였던 것이다. 제도로서는 本宗을 중시하지 않으면 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吾東方典章文物, 皆法中國, 唯婚姻之札, 尙循舊俗, 以陽從陰, 男歸女家, 生子及孫, 長於外家, 人不知本宗之重²⁾

과 같이 아버지가 처의 친정에서 생활하면서 자식을 낳고 그 자손은 외가에서 성장하게 되므로 본종, 즉 아버쪽의 혈족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중국식 친족칭호는 본종과 외친, 즉 동성과 이성에 따라 다른 것이지만 관습상으로는 아래 문언에서와 같이 구별되지 않았다.

司諫院大司諫金壽寧等上流曰, (中略), 本國之俗, 男歸女第, 異姓之親恩義之分, 與同姓無別, 大父在, 則從兄養於一家, 曾大父在, 則再從兄弟養於一家, 夫養於一家, 自幼至長, 自相謂兄弟, 自相謂叔姪, 自相謂祖孫, 其恩愛果有異於同姓之親乎³⁾

즉, 內外從 형제자매, 姨從 형제자매가 같은 집에서 거주하고, 외삼촌과 생질이 같은 집에서 거주하며, 외조부와 외손자가 같은 집에서 거주하였으므로 그들 사

2) 太宗實錄 14년(1414) 正月乙卯條.

3) 成宗實錄 2년(1471) 5月壬辰條.

이에 호칭도 同宗의 경우와 같았다고 하는 것이다. 宗法的 가족제도가 뿌리를 내리고, 따라서 남귀여가혼속이 쇠퇴하게 되는 후세, 특히 18세기 이후에는 本宗(同姓)과 姨從(異姓·外親)은 호칭이 확연히 구별되게 되었다. 가령, 아버 쪽의 伯叔父母에 대해서는 호칭에 반드시 要素的 호칭으로서 부·모가 칭하여졌음에 비해 어미 쪽의 曷숙부모에 대해서는 부·모의 요소적 호칭이 사라지게 되고 그를 曷숙, 曷삼촌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즉, 부·모의 요소적 호칭은 本宗에 한정하게 되고 外親에 대해서는 반드시 ‘外’, ‘姨’를 붙여서 칭하게 되었다.

처쪽의 친족 중 처의 부모에 대한 관계, 호칭도 자기의 부모에 대한 경우와 같았다. 즉,

御經筵講訖, 司諫金誥掌令奉元孝啓曰, 我國之俗, 贅於妻家, 視妻父母, 猶己父母, 妻之父母, 亦視其婿, 猶己子也⁴⁾

와 같이 사위가 처의 친정에서 생활하므로 그 관계가 부모와 자식 관계와 같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 간의 호칭도

義禁府啓, (中略), 我國無中國親迎之禮, 皆以妻家爲家, 稱妻之父曰父, 妻之母曰母, 常以父母事之, 是亦綱常也.⁵⁾

와 같다. 처의 부모에 대하여 자기의 부모에 대한 호칭과 동일하게 아버님, 어머님이라 부르고 그를 부모로 섬겼으며 이를 綱常으로 보고 있다. 처의 부모는 중국칭호에서는 外舅, 外姑이고, 어디까지나 처의 부모이지 자기의 부모는 아니다. 처의 부모에 대한 칭호·호칭도 외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후세에서는 처의 부모를 중국칭호인 曷구·曷고로 칭하고, 호칭은 장인·장모로, 처의 친정을 장가, 처가로 부르게 되었다. 다만 양반계급에서는 처부모에 대해 부·모의 요소적 호칭이 절대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되었음에 비해⁶⁾ 양반이 아닌 서민계급에서는 변

4) 成宗實錄 18년(1487) 8월 癸酉條

5) 成宗實錄 21년(1490) 6월 戊申條

6) 그의 특히 양반계급에서는 처쪽의 부모, 조부모 등의 근친을 제외하고는 친한 사이를 유지하더라도 친족간의 원근에 따라 촌수를 확인하여 친족호칭을 사용하지 않았다. 가령 처의 연상의 형 또는 숙부 등이 자기와 9세 이하의 연령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서로 경어를 사용하지 않았음을 물론 兄, 叔의 친족호칭도 사용하지 않았다. 마치 동년배의 친구를 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표현해주는 속담으로서

함 없이 계속 이를 아버님·어머님이라고 부르면서 자기의 부모를 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섬겨왔다. 특기하여야 할 것은 아마도 18세기 이후에는 양반계급에서는 처의 친정을 멀리하게 되어, 「妻家에 자주 왕래하는 자는 반푼이다」든가, 처가에 세배하러 가지 않거나 세배 갈 시기를 지나서 가더라도 관계없다는 의미로 「처가집 세배는 앵두꽃 필 때 간다」든가, 사위는 자식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사위 자식 개자식」이라는 속담이 전해져 왔다.

Ⅲ. 大明律直解의 親族稱呼

중국 명나라의 형법전인 大明律은 조선왕조의 건국과 동시에 조선의 일반형법전으로서 시행되었다. 그런데 대명률에 규정되어 있는 제도용어는 형률에 한하지 않고 名例律, 吏律, 戶律, 禮律, 兵律, 工律의 律에 걸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관한 법전이다. 그러나 율의 제도용어가 당시의 벼슬아치들에게 생경하고 난해하였던 탓으로 이를 당시까지 관용되고 있던 토착용어로 번역하여 태조 4년(1395년)에 간행하였다. 이를 편의상 대명률원전과 구별하기 위해 「大明律直解」라고 칭하고 있다. 直解에 이용된 底本은 洪武 22년율(1389)이지만, 되도록 충실히 당시 朝鮮의 (다시 말하면 고려말 이래의) 용어로 번역하고 있으므로 직해의 내용은 귀중한 문헌이 된다. 특히 조선 고어의 연구에 있어서 중요하며, 동사, 조사, 부사 및 특수 용어는 고래의 吏讀文을 이용하여 직해는 물론이고 해설적 역해까지 하고 있어 그 점에 있어서도 빠뜨려서는 안될 사료이다.

대명률직해에서는 친족명칭을 하나하나 설명적으로 해설, 기술하고 있는 경우와, 설명적 기술에 덧붙여 特示的 친족칭호로 표시한 경우가 있다. 대명률의 직해는 高士燾과 金祇가 주도하고 鄭道傳과 唐誠이 운색한 것으로, 그 외에 이들에 조력한 실무관리가 있었으리라고 추측된다. 그것은 대명률의 各律 또는 同律 중의 같은 용어가 두세 가지 다른 방법으로 직해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이두의 사용법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미루어 알 수 있다. 그리고 친족명칭의 직해에 통일성이 없는 점은 직해자의 견해의 차이도 있고, 직해가 당시의 일상적 칭호로 통일하려는 목적에서였던 경우도 있고 법령의 해석적용을 직접 담당하는 관리로 하여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친절히 직해한다는 의도에서 행해진 경우

「처가집 촌수는 개 촌수」라는 말이 있다. 결국 친족관계가 없다는 뜻이다.

도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일상적 호칭 및 칭호와 다른 직해 용어는 대명률의 친족 명칭이 당시의 사람들이 관용하지 않았든가 혹은 친족 내지 근친의식을 갖고 있지 않았던 난해한 칭호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1. 설명적 기술의 경우

- 伯叔父 — 父_矣兄弟 (名·應議者之父祖有犯, 아버지의 형제)⁷⁾
 伯叔母 — 父_矣兄弟妻 (名·應議者之父祖有犯, 아버지의 형제의 처)
 伯叔父_矣妻 (戶·尊卑爲婚, 백숙부의 처)
 同姓三寸叔妻 (刑·親屬相姦, 동성 삼촌인 아자비의 처)
 姑 — 父之姊妹 (刑·罵尊長, 아버지의 자매)
 父之同生姊妹 (名·應議者之父祖有犯, 아버지의 동생 자매)
 父_矣同生妹 (上同·아버지의 동생 매)
 從祖伯叔母 — 五寸叔父_矣妻 (刑·親屬相姦, 오촌인 아자비의 처)
 從祖祖母 — 同姓四寸大父妻 (刑·親屬相姦, 동성 사촌인 한아버지[大父]의 처)
 兄弟妻 — 同生兄弟妻 (刑·親屬相姦, 동생인 형제의 처)
 舅姑 — 夫_矣父母 (刑·妻妾罵故夫父母, 지아버지의 부모)
 外祖父母 — 母_矣父母 (名·十惡, 어미의 부모). 직해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舅 — 母_矣媵 (戶·娶親屬妻妾, 어미의 남자형제). 媵은 여자 측에서 남자 형제를 칭하는 뜻으로 만든 우리 글자이다.
 舅妻 — 母_矣媵_矣妻 (戶·娶親屬妻妾, 어미의 남자형제의 처)
 姨 — 母_矣同生姊妹 (戶·尊卑爲婚, 어미의 동생 자매)
 堂姨 — 母_矣四寸姊妹 (戶·尊卑爲婚, 어미의 사촌인 자매)
 外甥 — 女子_矣子 (名·應議者之父祖有犯, 여자의 자, 즉 딸의 자식)
 堂外甥 — 吾_矣四寸姊妹所生女 (戶·尊卑爲婚, 나의 사촌 자매가 낳은 딸)
 甥妻 — 妹子_矣妻 (戶·娶親屬妻妾, 자매의 아들의 처). 매자는 자매의 아들

2. 설명적 기술을 첨가한 칭호의 경우

- 伯叔父 — 父_矣兄弟在伯叔父 (名·十惡, 아버지의 형제인 백숙부)⁸⁾

의

7) 이두에는 傍線을 붙여둔다. 이하 같다. 「矣」는 「무엇무엇의」의 「의」의 의미이다. 괄호 안의 「名·應議者之父祖有犯」은 명례율의 해당 조문명이다. 이하 같다.

- 伯叔母 — 伯叔妻在母 (名·十惡, 백숙의 처인 어머니)
 伯叔父母 — 三寸伯叔父母 (刑·罵尊長, 삼촌인 백숙부모)
 姑 — 父矣同生妹在姑 (名·十惡, 아버지의 동생 자매인 아즈미)
 同姓三寸少爲母 (戶·尊卑爲婚, 동성 삼촌인 앓흔어미 또는 아촌어미)
 從祖姑 — 五寸叔母 (刑·親屬相姦, 오촌인 아즈미)
 堂姑 — 五寸少爲母 (戶·尊卑爲婚, 오촌인 앓흔어미 또는 아촌어미)
 從祖 — 同姓四寸大父 (刑·親屬相姦, 동성 사촌인 한아버)
 從祖祖母 — 同姓四寸大父妻 (刑·親屬相姦, 동성 사촌인 한아버의 처)
 從祖祖母 — 四寸大母 (刑·親屬相姦, 사촌인 한어미[大母])
 從祖伯叔母 — 五寸叔父矣妻 (刑·親屬相姦, 오촌 아자비의 처)
 房族伯叔 — 同姓五寸叔 (名·應議者之父祖有犯, 동성 오촌인 아자비)
 房族兄弟 — 同姓四寸·六寸兄弟 (名·應議者之父祖有犯, 동성 사촌 또는 육촌 형제)
 堂姪 — 同姓五寸姪 (刑·殺大功以下尊長, 동성 오촌인 질)
 同姓三寸姪 (刑·略人略賣人, 동성 삼촌 질). 이는 잘못된 직해인 듯.
 己之舅 — 吾矣異姓三寸少爲父 (戶·尊卑爲婚, 나의 이성 삼촌인 앓흔아버 또는 아촌아버)
 兩姨 — 異姓三寸少爲母 (戶·尊卑爲婚, 이성 삼촌인 앓흔어미 또는 아촌어미)
 妻姪 — 妻矣同姓三寸少爲子 (名·應議者之父祖有犯, 처의 동성 삼촌인 앓흔아들)

앞의 예에서 얼핏 보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은 조부모, 부모, 자손, 처첩, 형제자매의 경우는 대체로 대명률의 칭호대로 적고 있지만 기타 방계친족의 경우에는 부계, 모계, 처계에 따른 칭호의 분화가 없어서 세 계통에 공통인 기본어에 父系, 母系, 妻系의 친계와 촌수를 사용하여 직해하고 있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후에 상술하기로 한다.

3. 기타 親族關係用語의 直解例

- 同宗 — 同宗 (刑·發塚, 戶·娶親屬妻妾)
 同姓 (戶·娶親屬妻妾)

8) 「在」은 「~인, ~다운, ~되는」의 의미.

- 同堂 — 同姓 (刑·毆大功以下尊長)
 同姓四寸 (刑·略人略賣人)
- 親 — 父母 (戶·娶部民婦女爲妻妾)
- 繼父 — 義父 (刑·毆妻前夫之子)
- 繼母 — 繼母 (刑·干名犯義)
- 嫡母 — 嫡母 (上同)
- 慈母 — 養母 (上同)
- 所生母 — 親母 (上同)
- 妻 — 嫡妻 (戶·妻妾失序)
 正妻 (上同)
- 妾 — 妾 (刑·略人略賣人)
- 子 — 子息 (戶·立嫡子違法)
 親子 (上同)
- 庶出 — 妾妻子息 (戶·男女婚姻)
- 庶長子 — 妾長子 (戶·立嫡子違法)
- 庶長子孫 — 妾妻長子孫 (吏·官員襲蔭)
- 子孫婦 — 子孫妻 (名·尊卑爲婚)
- 兄 — 吾_矣兄 (名·十惡)
- 姉 — 長妹 (戶·居喪嫁娶)
 吾_矣長妹 (名·十惡)
- 姉妹 — 姉妹 (戶·尊卑爲婚)
- 兄姉 — 兄姉 (刑·同姓親屬相毆)
 兄_果姉妹_果 (刑·毆大功以下尊長, 형과 자매와⁹⁾)
 姉妹 (禮·匿父母夫喪)
- 姪 — 親姪 (吏·官員襲蔭)
- 大功以上尊長 — 大功同姓四寸已上族長 (名·十惡)
- 小功尊屬 — 小功同姓五, 六寸族長 (上同)
- 期親 — 期喪內族長 (戶·居喪嫁娶)
 期年喪 (戶·別籍異財)

과

9) 「果」는 「무엇 무엇과」의 「과」의 의미.

總麻以上 — 總麻八寸以上親 (刑·皇家袒免以上親被毆)

總麻已上親 — 總麻同姓八寸已上親 (名·十惡)

袒免親 — 同姓八寸外 親族 (刑·皇家袒免以上親)

袒免已上親 — 同高祖爲在¹⁰同姓八,九寸親 (名·八議, 동고조[同高祖]인 동성 8, 9
촌친)¹⁰⁾

外姻 — 外族 (戶·尊卑爲婚)

外孫 — 外孫 (刑·毆期親尊長)

女婿 — 女婿 (戶·尊卑爲婚)

婿 — 女夫 (戶·逐婿嫁女)

부모, 자손, 형제자매, 처첩에 대해서 직해하지 않은 것은 다른 傍系親의 경우와는 달리 이는 방계친족 칭호의 基本語이므로 직해의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IV. 經國大典의 親族稱呼

經國大典은 새로이 통일 법전을 편찬할 목적으로 세조 4년(1458년)에 착수되었는데 이는 조선 건국 초에 頒行되어 빈번히 개정 증보를 거친 經濟六典 및 續典을 계승한 것으로, 경국대전 역시 마찬가지로 수정·증보를 거쳐 성종 16년(1485) 1월 1일부터 최종적으로 확정 시행되었다. 이 경국대전의 禮典에는 五服條가 있고, 喪服親의 칭호와 그 喪期가 규정되어 있다. 상복친의 분류는 본종, 외친, 妻親, 夫族, 妾爲家長, 三殤, 出嫁女爲本宗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도 중국식의 친족칭호가 답습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조선에서 생경하여 관행되지 않는 친족칭호에 대해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고유의 촌수 및 칭호를 註記하고 있다. 이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伯·叔父母 — 三寸叔及妻

姑 — 父之姉妹, 母之姉妹

堂兄弟 — 四寸兄弟

堂姉妹 — 四寸姉妹

註

10) 「爲在」은 「어떠 어떠한」의 「한」의 의미, 「同高祖爲在」는 「高祖를 같이한」의 의미.

伯·叔祖父母 — 四寸大父及妻(4촌 한아버지 및 처)

從祖祖姑 — 四寸大母(4촌 한어미)

姪孫 — 四寸孫

姪孫女 — 四寸孫女

堂伯·叔父母 — 五寸叔及妻(5촌 아저씨 및 처)

堂姑 — 五寸叔母(5촌 아저씨)

族曾祖父母 — 五寸大父及妻

族曾祖姑 — 五寸大母

堂姪 — 五寸姪

堂姪女 — 五寸姪女

曾姪孫 — 五寸孫

曾姪孫女 — 五寸孫女

再從兄弟 — 六寸兄弟

再從姊妹 — 六寸姊妹

族伯·叔祖父母 — 六寸大父及妻

族祖姑 — 六寸大母

族伯·叔父母 — 七寸叔及妻

族姑 — 七寸叔母(7촌 아저씨)

再從姪 — 七寸姪

再從姪女 — 七寸姪女

堂姪孫 — 六寸孫

堂姪孫女 — 六寸孫女

族兄弟 — 八寸兄弟

族姊妹 — 八寸姊妹

從母 — 母之姊妹

內·外兄弟 — 舅之子, 姑之子

經國大典에서도 大明律直解와 마찬가지로 부계혈족의 존속 여자는 삼촌인 姑를 아버지의 자매[父之姊妹]로, 모계혈족을 어미의 자매[母之姊妹]로 註記하고 同輩行의 堂姑, 族姑에 대해서는 叔母로 주기하고 있다. 또 經國大典 吏典의 相避條에서도 「本宗三寸叔母·姪女夫」, 「外親三寸叔母夫」, 「妻妾親同姓三寸叔·姪, 叔母」

라고 하고 있다. 여기의 숙모에는, 「本宗三寸叔母」라는 것은 姑이고 「外親三寸叔母夫」라는 것은 姨의 지아버(이모부)이며, 「妻妾親同姓三寸叔母」라는 것은 처첩의 姑母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칭호는 대명률직해의 칭호가 당시까지 통용되고 있던 증거이고, 조선중기 이후 숙모는 삼촌숙의 처만을 칭하는 칭호가 되고 姑는 고모를, 姨는 이모를 칭하도록 변화한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결국 「숙모」는 자기의 同宗叔에 귀속한 尊屬妻의 고유칭호가 되었다.

V. 칭호 · 호칭의 구조원리

한국에서 친족칭호 및 호칭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鷄林類事이다.¹¹⁾ 여기에는 祖, 父, 母, 伯叔, 伯叔母, 兄, 嫂, 姊, 弟, 妹, 夫, 妻, 孫, 舅, 姑, 婦, 姨姪, 男兒, 女兒의 호칭이 기재되어 있다. 이 중에서 주의를 끄는 것은 부모의 輩行에 해당하는 방계존속에 대한 호칭이다. 즉,

叔伯皆曰丫查秘

叔伯母皆曰丫子彌

姨姪亦皆曰丫子彌

이다. 백부, 숙부의 구별 없이 모두 「아자비」(丫查秘)라고 부르고 백모, 숙모, 姨姪(외숙모)의 구별 없이 모두 「아즈미」(丫子彌)라고 불렀던 것이다. 국어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丫查秘」는 「父」에 대해 「從·少·微」의 의미를 붙인 호칭이고, 「丫子彌」는 마찬가지로 「母」에 대해 「從·少·微」의 의미를 붙인 호칭이라고 추정하고 있다.¹²⁾ 그런데 계림유사에는 어미의 남형제인 舅와 아버지의 자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대명률직해에는 이를 직해하였고, 또 姨에 대해서는 경국대전의 註記가 대명률직해의 경우와 동일하다. 이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1) 「鷄林類事」는 고려 肅宗 8년(崇寧 2년 癸未, 1103) 6월 5일부터 동년 7월 14일까지, 宋의 사신과 함께 書狀官으로 고려에 온 孫穆이 저술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중 국어사 연구에서 중요한 자료인 「方言」 부분의 기록방식은 송대 중국자음(한자음)을 이용하여 12세기의 고려어를 기록한 것이다(강신향, 鷄林類事 「高麗方言」研究, 성균관대학교출판부, 1980. 9, 9-10면).

12) 이기문, “‘아자비’와 ‘아즈미’”(국어학 제12집, 1983. 12).

- 舅 — 異姓三寸少爲父, 外親三寸叔
 伯叔父 — 三寸叔, 同姓三寸叔
 姑 — 叔母, 三寸少爲母, 同姓三寸少爲母, 本宗三寸叔母
 堂姑 — 五寸叔母, 五寸少爲母
 族姑 — 七寸叔母
 兩姨 — 異姓三寸少爲母, 外親三寸叔母
 伯叔母 — 伯叔妻在母

앞에서 「少爲」는 이두로서 「앗흔」이며 「적다」는 의미, 즉 「적음, 나이가 어림, 작음」(微, 年少, 小)의 의미를 갖고 있고,¹³⁾ 「叔」에도 「적음·나이가 어림」(少, 年少)의 의미가 있어서 「少爲」는 「叔」과 같고 「少爲父」는 「叔父」이고 「三寸叔」은 「三寸叔父」의 약어이다. 「少爲母」도 「叔母」이고 백숙처인 백숙모도 마찬가지로 「백숙처인 어미」, 즉 숙모이다. 결국 아버지를 제외하고 아버지와 동렬인 방계존속남자는 동성·이성을 불문하고 모두 아자비이고 아버지와 어미의 동렬의 혈족 여자의 남편도 역시 아자비였다는 것도 추측할 수 있음은 물론, 아버지와 어미의 동렬의 자매를 비롯, 그 형제의 처는 동성·이성을 불문하고 모두 아즈미였다는 것이다.¹⁴⁾ 아자비, 아즈미의 호칭에 있어서 부모의 연상, 연하, 즉 백숙을 구별하지 않았던 것은 부모를 제외한 그 동렬에 있는 사람은 부모보다 열등하다고 하는 관념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방계존속 중 아버지와 동렬인 사람은 동성이성을 불문하고 아자비였고, 그들은 모두 「아비」(父)를 요소적 칭호로 하고 이에 장유(長幼, 伯叔), 동성·이성 내지 본종·외친·촌수에 의해 그 친계와 원근을 측정하는 파생적 칭호를 칭한 것인데, 기본적으로는 父系, 母系, 妻系, 夫系의 구별이 없는 점이 특징이다. 또 어미와 동렬에 있는 사람은 동성·이성을 불문하고 아즈미였고, 그들 모두 「어미」(母)를 요소적 칭호로 하여 여기에 백숙·동성·이성 내지 본종·외친·촌수에 의해 그 친계와 원근을 측정하는 파생적 칭호를 덧붙여 칭하였는데, 역시 기본적으로는 부계, 모계, 혈족, 姻族의 구별이 없었다.

13) 이기문, 위의 글, 9면 이하. 강신항 교수도 「아촌」은 「小·次·亞」의 뜻으로 본다(鷄林類事「高麗方言」研究,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80, 69면).

14) 아자비는 아비에 「從」을 의미하는 「앗」(기저형은 앓)이 결합한 것으로 「앗흔」이고 아즈미도 마찬가지로 어미에 「앗」이 결합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기문, 위의 글, 4-8면.

조부모와 동렬에 있는 사람의 칭호는 「아버지」(父) 또는 「어머니」(母)를 요소적 칭호로 한다. 즉

祖 — 大父
 伯·叔祖 · 四寸大父, 同姓四寸大父
 族曾祖 — 五寸大父
 族伯·叔祖 — 六寸大父
 從祖祖姑 — 四寸大母
 族曾祖姑 — 五寸大母
 族祖姑 — 六寸大母

와 같고, 「아버지」(父)와 「어머니」(母)를 요소적 칭호로 하여 이에 「한」(大)을 덧붙여 한아버지와 같은 항렬에 있는 사람의 칭호로 하고, 또 동성, 이성과 촌수를 덧붙여 친계와 원근을 측정하는 파생적 칭호로 삼은 것이다. 이 칭호는 혈족의 경우에 한하지 않았고 혈족 한아버지의 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한어머니」(大母)로 불렀다.

위와 같은 구조원리는 형제자매와 같은 항렬에 있는 사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었다. 형제자매에 동성, 이성과 촌수를 붙인다. 자녀와 같은 항렬에 있는 방계 비속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少爲子 즉, 「子」에 「從」을 의미하는 「얕은」(少爲)을 붙이고 여기에 동성, 이성과 촌수를 표시하고 있다.¹⁵⁾

요컨대 어간에 요소적 칭호를 보존하면서 그 위에 각종의 제한적 관칭을 덧붙여 칭호로 한 것으로, 환언하면 성별규준원리(男女), 연령별규준원리(伯叔·長次), 세대별(尊卑) 규준원리(上下·大小)를 규준으로 하고 親等에 의한 원근측정을 위하여 촌수별(分岐) 규준원리와 族別 원리(本宗·外親·妻親·夫族)에 의해 구성하였다. 일상적 칭호에 있어서 족별에 의한 어간의 차이가 없는 점에서 중국과 차이가 있고, 중국칭호의 수용에도 불구하고 칭호의 개별화가 실생활에는 배어들이지 않았던 것이다.

VI. 法制上的 親族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국으로부터 수용된 친족칭호에 익숙해져서 어떠한 의심도 품지 않았던, 오늘날 한국인이 법률상 사용하고 또

15) 이기문, 위의 글, 8면-9면.

한 일상적으로 서로 부를 때 사용하는 친족호칭이 오륙백 년도 넘는 옛날, 즉 여말선초 이래로 동일한 것이었다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바가 비역사적임을 알 수 있다. 그와 달리 역사적 실체는 父系, 母系, 妻系, 夫系의 구별 없이 동일한 類別의 칭호·호칭이 사용되었고, 굳이 이들을 구별하기 위하여, 즉 법률상의 칭호로서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의 요소적 칭호에 친계 및 촌수가 덧붙여져 구별될 뿐이었다. 더욱이 이와 같은 칭호법은 남귀여가혼속을 무시한다면 정확히 규정해 내는 것이 불가능하다.

여기에서는 그와 같은 특색이 친족의 권리의무관계를 규정하는 법제상에서는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가에 관해 喪服制, 相避制, 奔競禁令 등을 통해 고찰하기로 한다.¹⁶⁾

1. 喪服制

喪服制는 삼국사기에 의하면 신라의 지증마립간 5년(서기 504) 4월에 시행된 기록이 있는데, 그 내용은 상세히 알 수 없다. 고려시대에는 성종 4년(서기 985)에 唐의 제도를 모방하여 제정한 상복제가 대명률의 상복제를 依用하게 되는 공양왕 3년(1391)까지 시행되었다. 이 성종 4년의 상복제는 唐制만이 아니라 남귀여가혼속에서 유래하는 외족·처족과의 사이의 恩義와 애정의 특수성을 반영, 고려하고 있다.

唐代的 상복제에서 외족·처족은 大唐開元禮에 의하면 외조부모, 舅, 姨가 小功親, 外孫子女, 外從兄弟姊妹, 內從兄弟姊妹, 姨從兄弟姊妹, 妻父母, 女婿가 總麻親으로 되어 있고, 외족은 4촌(4親等)까지, 처족은 처부모가 有服親으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 고려 成宗制에서는 외조부모는 자취기년(齊衰期年), 舅은 大功, 姨는 在室大功·適人總麻, 처부모와 女婿는 소공으로 하고 唐制보다는 등급을 높이고, 당제에는 없는 舅妻와 在室外甥女를 소공으로, 外甥妻와 堂舅를 시마친으로 한 것은 爾雅釋親에 따른 것으로 추측된다. 이와 같이 당제를 주로 하면서 남귀여가혼속에서 유래한 외족, 처족간의 恩義之分을 상복제의 제정에 즈음하여 충분히 반영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성종제는 명종 14년(1184)에는 入流 이상의 문무관의 처부모복을, 백숙부모와 마찬가지로 자취주년(齊衰周年)·給暇 20일로 높이고, 고려말의 恭讓王 3년(1391) 5월에는 상복제를 대명률 복제식에 의거하면서도 외조부모복과 처부모복

16) 이 장은 앞의 줄고를 요약한 것이다.

을 백숙부모와 마찬가지로 자취부장기(齊衰不杖期)로 하였다. 이는 처부모복은 明宗 14년법에 따르고 외조부모복은 성종 4년제를 계승한 것이다. 대명률 복제는 대당개원례 및 朱子家禮의 복제와 대동소이하나 外孫妻와 外甥妻는 대당개원례와 대명률에서는 無服이지만 주자가례에서는 시마로 되어 있고 外甥과 外甥女는 대당개원례에서는 無服이지만 주자가례와 대명률에서는 소공으로 하고 있는 점이 다르다.

조선왕조 건국초, 太宗 대에 남귀여가혼속의 특수성에 비추어 경국대전 복제의 외족, 처족의 상복이 주자가례와 다른 점에 관하여 비교검토가 행해졌다. 즉, 태종 11년 12월, 禮曹는 상복은 情에 상응하여 제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經濟六典 복제는 주자가례와 다르고, 4가지 점에서 人情에 상응하지 않으므로 개정하여야 한다고 아뢰었다. 즉, ① 주자가례에서는 外甥服은 소공, 外甥妻服은 시마, 外甥女服은 在室小功·適人總麻이지만 경제육전에서는 이성 사촌형제는 有服으로 하면서 이성 삼촌숙과 이성 삼촌질녀(외생과 외생녀)를 無服으로 하고 있는 점은 경중의 순서를 잃고 있다 ② 주자가례에서는 처부모·女婿의 복은 모두 시마로 되어 있는 데 비해 우리나라의 혼인의 예는 夫就婦家하는 점에서 중국과 다르므로 고려 성종제에서는 처부모복을 期年으로, 여서복을 소공으로 하였으나 경제육전 복제에서는 처부모복은 기년으로 하면서도 여서복은 중국제에 따라 시마로 하고 있는 점은 인정에 상응하지 않으므로 소공에 준하여 15일 급가로 할 것 ③ 주자가례에 의하면 여자는 출가 전에는 남자와 같은 상복을 입는 데도 경제육전에서는 이성형제복은 시마로 하고 이성자매는 無服으로 하고 있음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성 사촌자매도 재실시마·적인무복으로 할 것 ④ 주자가례에 의하면 외손·외손처복은 시마이지만 경제육전에서는 외손복은 시마, 외손처복은 무복이므로 외손처복도 시마로 할 것 등인데 예조가 아뢴 바대로 받아들였다. 또 태종 15년 정월에는 예조가 아뢴 대로 외조부모복은 대공·급가 20일, 처부모복은 소공·급가 15일로 각각 降一等, 降二等하였다. 세종 7년 5월에는 처부모복인 소공이 주자가례에 반한다고 하는 이유에서 개정의 논의가 있었다. 예조판서 申商은 개정에 앞서서 남귀여가혼속을 개혁하여 그 연후에 상복을 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六典詳定所는 외조부모복, 처부모복 모두 대공으로 할 것을 아뢰었다. 이에 대해 세종은 우리나라의 풍속에서는 외가에서 부양되거나 또는 처부모가에서 자라게 되는 까닭으로 그 사이의 恩義가 돈독하기는 하지만 先王의 제도를 일시적인 은의에 따라 參酌損益해서는 안된다고 하여 반대했다. 이에 대해 漢

城判尹 高若海는 婦家 혹은 외가로부터 온정을 받으면서도 유독 복제만을 정례(주자가례)에 따르는 것이야말로 근분을 버리고 끝을 짓는 것이며 풍속을 바꾸지 않는 한 상복을 가볍게 하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세종은 加服意見을 배척하여 세종 12년 6월에 처부모복을 시마·급가 10일로 결정하였다.

그 후 經國大典 禮典 五服條는 그 이전까지의 고유성은 말살되고 완전히 주자가례와 동일한 복제로 하고, 다만 주자가례와 대명률에는 없는 舅妻服을 시마로 함에 그쳤다. 이 경국대전의 복제는 오늘날까지 관습상 계승되었으나 光武 9년(1905) 4월에 시행된 刑法大全에서는 袒免無服親, 異姓無服親으로서 외증조부모, 外再從 형제자매, 從姨母의 아들, 內外從姪, 외증손, 처조부모, 처외조부모, 처백숙부모, 妻姑, 처형제, 처형제처, 妻姪, 처자매처, 처고모부, 자매부가 친족으로서 추가되었다.

이와 같이 외족, 처족의 상복의 고유성은 경국대전에 이르러 거의 상실하였으나 남귀여가혼속의 개혁이 없는 형식상의 예법제도에 의한 강제는 그 실효성을 기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서민계급에게는 상복제는 강제되지 않았고 양반계급도 17세기 무렵부터야 서서히 그에 따랐던 것이다.

2. 相避制·奔競禁令

상피제도는 사무처리 및 재판의 공정을 기하고 혐의를 피하기 위하여 서로 친족관계에 있는 관리가 동일 官司에 재직하는 것을 금하고, 재판관 및 科擧의 考試官이 사건 담당자 및 응시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에 사건처리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인데, 이를 중국에서는 避親이라고 칭하였다. 중국에서 관리의 피친범위는 唐代에는 大功以上親이었고 宋代의 康定 2년(1041) 정월법에서는 本族總麻以上親, 有服外親, 無服外親이었고, 元祐 5년(1090) 10월법에서는 처의 대공이상친과 姉妹夫, 外甥이 추가되었다. 또 고시관의 회피범위는 宋代에 이르러 詳密한 제도가 되었는데 淳熙 5년(1178) 정월법에서는 본종단문이상친, 同居無服 혹은 시마이상친 및 그 지아비, 자식과, 어머니 또는 처의 시마 이상친 및 대공이상친의 지아비, 자식 또는 女婿, 子妻의 期以上親이었고, 元代에도 五服內親의 관계에 있는 경우는 회피시켰다.

고려시대의 상피범위는 본족은 父子孫, 同生兄弟, 堂兄弟, 동생자매의 지아비, 堂姉妹의 지아비, 백부·숙부, 백모·숙모의 지아비, 질녀의 지아비, 여서, 손녀서이고, 외족은 어머니의 부모, 어머니의 동생 형제, 어머니의 동생자매의 지아비, 어머니의

동생형제자매의 지아비이고, 처족은 처의 형제자매의 자식, 질녀의 지아비였다. 외족보다도 처족의 상피범위가 넓은 점, 본족도 5촌 이하는 4촌 이내의 외족·처족보다도 遠親이고, 근친의식이 희박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 이와 같은 상피범위는 남귀여가혼속에서 유래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조선왕조시대에도 대명률은 적용하지 않고 고려제를 계승하였으나 외족·처족의 범위는 고려제보다도 확대되었다. 즉, 經國大典 吏典 相避條에 의하면 본종은 대공이상친, 女夫, 孫女夫, 姉妹夫이고, 외친은 시마이상친이고, 처친은 妻父, 처조부, 처형제, 妻姉妹夫이고, 또 일정한 官司에서는 본종 삼촌숙모부, 삼촌질녀부, 사촌자매부까지, 외족은 삼촌숙모부까지, 처의 친족은 처삼촌숙, 처삼촌질, 처숙모부, 처질녀부, 처사촌형제까지 확대되었다. 당시의 대명률에 비하여 넓고, 고려제보다도 넓지만 그것은 현실적인 친족생활상의 情義를 중시하였기 때문이다. 고려도 조선도 본종, 외족, 처족의 구별 없이, 거의 동일하게 4촌의 범위로 한 점에 특색이 있다.

관리등용에 있어서 정실에 의한 인사가 행하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權貴 執政의 집에 출입하는 것을 금한 奔競禁습에 있어서도 동성 8촌과 외족·처족의 6촌 이내의 사람은 근친으로 보아 출입왕래가 허용되었다.

이와 같이 고려기 이래 외족과 처족은 본종과 차별 없이 같은 범위의 근친관계로서 법적으로 인정되었고,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평가할 때라든가 혹은 정치적 지위를 획득한 경우에는 본종 외에 외족과 처족의 힘의 대소가 항상 문제가 되었던 것이며 상피범위는 바로 이와 같은 사정에 부응하여 정하여졌던 것이다.

VII. 17세기 이후의 변화

조선왕조의 중기 이후, 즉 17세기 무렵부터는 중국의 有服親制度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였다. 그에 따라 광범한 친족제도와 의식은 이 시기부터 중국의 제도와 거의 구별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친족관계 규정에 의해 결정적인 의의를 갖게 된 것은 「宗」의 개념으로, 이를 중심으로 하여 친족의 종별과 친계가 제도화되었다. 「宗」은 모계와 처계를 배제한 친족개념으로서 宗族, 同族, 宗人, 族人·同宗, 同姓이라고도 칭하고, 종족이 집단을 구성하면 문중, 종중이 되는 것으로, 공동선조인 남자의 부계친의 혈통질서이다. 종의 범위는 공동선조를 누구로 할 것인가에 의해 무한히 몇 십대를 지나도 끝이 없고, 이중성을 서로 허용하

지 않는 배타적인 관계이다. 동종·이종을 구별하기 위해서 성과 본관이 사용되고, 원칙적으로 성과 본관을 같이 하는 자끼리는 同宗者이며, 따라서 성은 각 개인의 종에 대한 배타적 소속관계를 표시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종은 부계혈족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후세에 이르러 賜姓 등에 의해 성이 바뀌어도 시조에까지 거슬러 올라가 서로 동일 남계시조를 공통으로 하는 것이 확인되면 동종이 되고 동종의식 아래 동종불혼의 혈연관계가 된다. 여자는 2개의 종에 속하게 된다. 자연적으로는 아버지의 종에 속하여 출생한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변함없이, 혼인을 하여도 자기 고유의 종을 표상하는 성을 칭한다. 그러나 한편 사회적으로는 여자는 혼인에 의해 남편의 종에 귀속하기 때문에 두 개의 종에 속해야만 하는 숙명을 지니게 된다.

친족관계도 종의 개념을 중심으로 하여 고려하게 되어 있다. 자연적, 사회적으로 자기의 종에 귀속하는 자, 즉 부계혈족 및 그 처를 총칭하여 「本宗」 또는 「本族」, 여계혈족 및 처족 등 본종이 아닌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外姻」, 「外親」, 「外族」이라고 부른다. 조선왕조 시기의 통일법전인 經國大典 禮典 五服條에 의하면 남계혈족 및 그 처를 「本宗」으로, 외가(어미쪽) 친족, 출가녀의 자녀, 同母異父 형제자매 등을 「외친」으로, 처, 처부모, 여서(女婿), 외손자녀, 외손처를 「처친」으로, 남편의 남계혈족과 그 처를 「夫族」으로 구별하고 있다. 따라서 친속 또는 친족이라고 말하는 경우는 본종, 외친, 처친을 총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宗」과 「族」은 동일 범주에 속하지만 「외친」이라든가 「처친」이라하는 「친」은 「종」과는 구별하여 사용되는 개념이다. 「夫族」의 「족」도 「夫宗」의 「宗」과 동일한 의미이며 「동종·동족·종족」과 「외친」, 「처친」으로 구별하는 것이 한국인의 의식을 지배하는 친족종별법으로 된 것이다. 때로는 「동성친」, 「종친」이라고도 칭하나 동성이 「종」이므로 「친」은 「종인 친족」의 의미이다.

이와 같은 종개념 중심의 친족관계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게 되었다. 즉, 시가슈조(滋賀秀三)교수가 중국의 친족에 관하여 규명한 바와 같은 개념이 한국의 경우에도 타당하게 되었다.¹⁷⁾ 자기와 동일 남계의 핏줄로 결합된 자는 근친·동류이고, 사람은 핏줄을 아버지와 어미의 양방으로부터가 아니라 아버로부터만 받는다. 따라서 종의 본질은 부자관계의 重疊·連繫에 의해 형성되고 아무리 분기하더라도 전체로서 동일성을 잃지 않는 점에 있다. 이 부자혈연의 동일성이 바로

17) 이 장은 滋賀秀三, 中國家族法の原理, 제1장 基本的諸概念의 제1절 親族について(19~39면)을 주로 요약한 것임을 부언하여 둔다.

생명의 本源이고 사람의 본성은 부계혈통에 의해 규정된다고 생각한다. 父子는 至親이며 分形同氣라고 하는 뜻은 아버지와 아들은 현상적으로는 두 개체이지만 생명 그 자체는 동일하고 아들은 아버지의 생명의 연장 그 자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한국에 있어서 동중에 의한 同宗村의 형성과 그 종적 폐쇄성·배타성과 종법적 종중 및 문중의 형성도 상술한 종의식으로부터 유래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동종과 이종을 준별하는 법률제도, 관습, 친족의식은 오늘날 산업화·도시화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한국인의 친족관념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VIII. 결론

위에서 필자는 계림유사가 저술된 12세기 초의 고려 시기부터 經國大典이 시행된 조선왕조의 15세기경까지 고유의 친족칭호가 중국친족칭호의 수용에도 불구하고 관행되었고 또한 그것이 남귀여가혼속에 의하여 지탱되면서 법제상에 있어서도 그 특색을 지켜왔다는 점을 서술하였다. 무엇보다도 실제의 관행을 밝혀야 하겠지만 이는 같은 시대에 작성된 遺産分財文書, 財産贈與文書, 契約文書 등에 의해 밝혀질 수 있다. 왜냐하면 그러한 문서에는 친자간, 조손간, 형제자매간 등 지친인 당사자 이외에 그 문서작성에 증인 또는 문서작성자로써 관여하는 동성·이성의 방계친족과 문서당사자와의 친족관계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고문서의 분석은 논외로 했으나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적할 수 있다. 즉, 이미 말한 친족칭호법이 여전히 그대로 사용되고 있고 孫, 姪, 叔, 祖, 兄, 弟 등의 요소적 칭호에 동성, 이성과 촌수를 붙이고 있을 뿐이며, 법제상의 중국친족칭호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당시에는 오늘날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從·堂, 再從·再堂, 三從, 四從 등의 친등용어도 사용하지 않았던 것이다.

여하튼 친족칭호의 체계 내지 호칭이 반드시 항상 친족관계의 충실한 표현이 아님은 인정하나 칭호법 내지 호칭법은 일상적으로 표시되는 친족관계 질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으며 또한 여말·선초의 친족칭호는 친계에 의한 구별의식 없이 거의 4촌 내의 근친에 한정된 권리의무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권리관계인 유산상속인은 4촌 내의 혈족에 한정되었던 것이 적어도 여말 이래 조선말까지의 법관습이었던 것이다. 「4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도 4촌이 최후의 근친이라는 관념의 표현이다.

오늘날에는 산업화의 진전에 수반되어 동종존중의식 및 동종촌집단은 점차 붕괴되고 있고 그에 더하여 중국식의 친족칭호는 오늘날에는 통하지 않게 되었다. 여말·선초의 사람들이 난해하고 생경하게 여겼던 칭호는 오늘의 세대에 와서도 마찬가지로 난해하게 여겨지고 있고, 칭호 또는 호칭은 분명 5, 6백년의 과거에 거슬러 되돌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화·근대화의 기치 아래 개정된 가족법상의 친족의 범위는 「8촌의 혈족 및 4촌의 인척」으로 되어 역사상 가장 광범한 것이 되었다. 친족의 칭호·호칭과 근친의식은 근원으로 되돌아가고 있지만 법제는 그에 따라 되돌아가기는커녕 소위 근대화의 수행에도 상응하지 않는 반근대적인 것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이중성 내지 모순은 상복제에서 기인한 것이며, 우리가 여말·선초의 친족제도를 규명함으로써 그 역사적 성격이 명확히 되었다고 생각한다.

[後記]

이 글은 원래 일본국 법학자인 구로키 사부로(黒木三郎)교수의 고회기념논문집인 「アジア社會の民族慣習と近代化政策」(敬文堂, 1992. 5)의 1~10면에 실렸던 것이며 草稿를 삼분의 일로 줄여서 투고하였던 것이다. 모두 보완하여 완전한 글을 실어야 옳은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 글을 번역하여 실는다.

<Abstract>

The Structural principles of Kinship Terminology in the 12-15th Centuries Korea

Byong Ho Park*

This article is to inquire into the structural principles of kinship terminology through analysing the kinship-terms found in the Kerim yusa(鷄林類事), the Taming lui(大明律) and the Kyounguk taejon(經國大典: the National Code of the Choson dynasty). It finds that the terms for kinship usually used from 14th to early 15th centuries were traditional Korean ones and accepted Chinese kinship principles were not operated.

In traditional system, Father(父), mother(母), Son(子), brother(弟) is elementary terms and the complex ones are made by adding various limited terms to that. So, the basic structural principles are the principle of distinguishing gender, ages and generation. They did not have sense to distinguish family members by decent rules.

But In 17th century, the Chinese family system and kinship principles adopted earlier were used popularly and the Korean system became very similar to Chinese one from that time.

* Professor Emeritus, College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